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1)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 운영 개선 -

〈윤준병의원 제2200573호, 임미애의원 제2206523호,
안호영의원 제2206528호, 이원택의원 2207694호〉

2025. 12.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 목 차 ▶

I. 총괄	1
1. 국회 심사경과	1
2. 개정안 주요내용	1
II. 조문별 검토	2
1. 도시조합 정의 신설	2
2. 도시조합의 도농상생협력의무	6
3. 도시조합의 비도시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	8
4. 도시조합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	10
5.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과	12
6.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15
7.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17
8. 경제사업 기준 이행 평가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	20
9.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규정 신설	22
10. 지역농협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	28
11.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	31
12. 조합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일원화	33
13.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39
14. 중앙회 이사회 및 임원에 경제·금융지주 대표 추가	43
15.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	50

16. 인사교류심의회의 설치·운영	55
17. 운영협의회의 설치	57
18.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59
19.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사항 등	62
20.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64
21.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	66
22. 중앙회 등 선거 관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	68
23. 간부직원 등 이사회 의견 진술 조항 정비	70
24.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	72
2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74
26. 부칙	77

I. 총괄

1. 22대 국회 심사경과

대표발의	제안일자	상 정	소위원회	법안소위 상정
윤준병의원	2024. 10. 30.	2024. 8. 26.	2024. 8. 26.	-
안호영의원	2024. 12. 16.	※ 소위 직회부	2025. 2. 7.	
이원택의원	2025. 1. 22.			
임미애의원	2024. 12. 16.	2025. 2. 18.	2025. 2. 18.	

2. 개정안 주요내용

윤준병의원안	안호영·이원택의원안	임미애의원안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 도시조합 정의 신설 및 도농상생사업비 등 납부 규정 신설 등 ○ 회원조합지원자금 규정 신설 ○ 조합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 조합장 선출방식 직선제로 일원화 ○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 등	○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II. 조문별 검토

1. 도시조합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도시회원: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전년도 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원	☐ 도시조합 정의 -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

☐ 주요내용

- 도시조합을 농업협동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으로 정의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르면 도시회원을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인 회원으로 규정¹⁾

☐ 현황

- 현행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른 도시조합은 2024년말 결산 기준 202개소로 전체 조합(1,111개소)의 18.2%이고, 도시조합의 자산 합계는 262조 7,735억원으로 전체 조합(542조 9,215억원)의 48.4%를 차지

1)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5조(설치기준) ② 회원이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도시회원(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전년도말 기준 총자산 5,000억원 이상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용점포 신설 시 판매장(하나로마트, 축산물프라자 등)을 병행 신설하여야 한다.

○ 최근 조합의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자산규모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특히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에도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총자산, 자기자본, 순이익에서 도시조합이 농촌조합의 각각 4.2배, 3.7배 및 3.5배 수준
- 도시조합은 매출총이익에서 신용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로 경제사업의 2.4배 수준

【 도시조합 및 비도시조합 자기자본 및 총자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납입출자금	총자산	자기자본	순이익
도시조합 평균(A)	27,077	1,300,859	87,181	3,540
농촌조합 평균(B)	10,743	308,194	23,348	1,025
대 비(A/B)	2.5	4.2	3.7	3.5

【 도시조합의 매출총이익 】

(단위 : 백만원)

2022			2023			2024		
매출총이익	경제사업	신용사업	매출총이익	경제사업	신용사업	매출총이익	경제사업	신용사업
6,098,522	1,509,153	4,589,369	6,151,226	1,673,499	4,477,727	6,079,966	1,804,275	4,275,691
100%	24.7%	75.3%	100%	27.2%	72.8%	100%	29.7%	70.3%

□ 검토의견

- 도시조합 정의 신설을 통해 도시조합에 비도시조합(농촌조합)과 차별화된 의무를 부과하는 등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
 - 개정안에 따른 도시조합의 정의는 농협중앙회 내규인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상 도시회원(조합)의 요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과 부합
- 다만, 개정안 수용 시 일부 자구 수정 필요<수정의견 p.5>
- (농식품부 의견) 도시조합 정의 규정 시 세부기준은 개정안과 같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
- (농협중앙회 의견) 도시조합의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보다 안 제134조의6에 따라 설치하는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필요

□ 조문자료

현행	윤준병의원안	수정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신설> 2. ~ 6. (생략)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2. ~ 6. (현행과 같음)	5. “도시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인구 30만 이상의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2. 도시조합의 도농상생협력의무(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조합, 중앙회 등에 대하여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부과	☐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 조합, 중앙회 등에 대하여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 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부과 - <u>도시조합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노력 의무 부과</u>

☐ 주요내용

-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 부과

☐ 검토의견

- 현행법에서 조합 등에 대하여 다른 조합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조합의 역할을 강조하려는 취지
- 다만, 상생의무의 내용을 정함에 있어 ‘등’이라는 불확정적 용어의 사용으로 책무의 대상이 불명확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등’ 삭제 필요<수정의견 p.7>
- (농협중앙회 의견) 현행법에 이미 동일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실익이 없음.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 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외국의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개정안과 같음) <u>② 도시조합은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상호교류 확대 및 조합 간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u>

3. 도시조합의 비도시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안 제57조의2제5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도시조합에 대하여 비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지원 허용

□ 주요내용

- 도시조합이 비도시조합의 농산물 판매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경제적 여유가 있는 도시조합이 비도시조합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도시조합의 농산물판매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취지
- 다만, 다음사항 수정 필요<수정의견 p.9>
 - 사업 규모화를 위해 도시조합 간 또는 비도시조합 간에도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전체 조합 상호 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 자금지원 방식이나 금액 등은 정관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기보다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수정
 - 조합 간 자금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행법 제57조제2항2)상 조합의 자금 차입처에 다른 조합 추가
-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의견) 필요성이 인정되나, 전체 조합 상호 간 자금지원을 허용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

2)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교육·지원 사업<각 목 생략>
2. 경제사업<이하 생략>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조문자료

현 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와의 공동사업 2.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판매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거래처 확보 등 농산물의 판매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 ④ (생략) <신설> 제57조(사업) ① (생략)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시조합은 도시조합 외 조합이 추진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개정안과 같음) ⑤ 지역농협은 다른 조합이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7조(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역농협은 제1항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공공단체, 다른 조합,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4. 도시조합의 연도별 농산물 판매목표액 설정(안 제57조의2제6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도시조합에 대하여 연도별 판매목표액 설정 및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의무 부과

□ 주요내용

- 도시조합에 대하여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해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의무 부과

□ 검토의견

- 도시조합이 신용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경제사업 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산자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
- 다만, 현행법 제142조제2항³⁾에 따라 조합은 경제사업 기준인 ‘총매출액 대비 경제매출액’ 최저의무기준(25%) 미달 시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조치를 받게 되는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표가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의견) 현행법에 따라 중앙회장이 조합별 경제사업 이행목표량을 정하고 있으며, 이행기준에 미달 시 경영개선권고 조치 등의 제재를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판매목표액 설정은 불필요

3)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경영 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생략) <u><신설></u>	제57조의2(농산물 판매활성화)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⑥ 도시조합은 조합원과 도시조합 외의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판매목표액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u>

5. 도시조합에 대한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 부과(안 59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 도농상생기금 출연: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3% 이내	☐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 신용매출총이익의 3% 이내

☐ 주요내용

-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조합이 중앙회에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하도록 규정

☐ 현황

- 도시조합은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4)에 따라 도농상생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을 납부 중이며, 도농상생기금 출연금은 조합에 반환의무가 있는 장기대여금임.

【 도농상생기금 vs 도농상생사업비 】

구 분	회계처리	조합 소유권	환급 청구	당기손익 영향
도농상생기금	장기대여금	있 음	가 능	없 음
도농상생사업비	당기비용	없 음	불 가	있 음

- 4)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2(기금의 조성) ①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5항에 의거 회원의 경제사업 손실보전을 통한 도농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농상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 ② 출연대상 회원은 전년말 총자산 1조원이상인 회원 또는 특별시·광역시 및 인구 30만명이상 시 소재 회원 중 전년말 총자산 5,000억원이상인 회원을 말한다.
- ③ 제2항의 출연대상 회원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3이내에서 기금으로 출연하되, 그 비율은 전무이사가 회원의 경영 여건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후략>
- 제72조의7(도농상생기금의 환급) 유동성부족으로 인하여 예·적금지급불능상태가 예상되는 등 도농상생기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회원이 납입하여 조성한 도농상생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도시조합에 대하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도농상생에 필요한 자원 조달의 구속력 및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취지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 필요<수정의견 p.14>
 - 도농상생사업비는 도농상생기금과 달리 조합의 당기비용으로 처리되므로 도시조합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납부를 경감·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검토 필요
 - 도시조합은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조합을 포괄하므로 조문 위치는 제2장(지역농협)보다는 안 제134조의6(도농상생 지원자금의 조성·운용) 앞에 신설 필요
- (농식품부 의견) 중앙회가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를 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필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재부 확인 중
- (농협중앙회 의견) 도농상생사업비는 도시조합의 비용부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생협력위원회가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받아 조성·운용하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의견(회계법인 자문결과, '25년 9.15)이 있어 이러한 경우 도농상생사업 등 본래의 목적에 전액 지출되기 어려운 점 감안 필요(필요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검토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59조의2(도농상생사업비)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한다.	제134조의6(도농상생사업비) ① 도시조합은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농상생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매년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3 이내의 범위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에 도농상생사업비를 납부한다. ② 중앙회는 도시조합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의 납부를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6.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안 제134조의6)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 주체: 중앙회 • 재원: 도시회원의 출연금 • 용도: 회원의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태풍, 수해, 구제역 등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사업 손실	☐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 주체: 중앙회 ▪ 재원: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 용도: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수행사업,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등

☐ 주요내용

- 중앙회가 도농상생사업비를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하여 도시조합과 비도시조합의 공동수행 사업, 도시조합과 비도시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등에 운용하도록 하는 등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규정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르면 중앙회가 도시회원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 태풍, 수해, 구제역 등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사업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

☐ 검토의견

- 도농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근거를 중앙회 내규인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이 아닌 법률에 마련하려는 취지
- 다만, 도농상생지원자금이 도시와 농촌의 상생을 위한 자금임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 수정 필요<수정의견 p.16>
- (농협중앙회 의견) 현재 도농상생기금이 회원의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⁵⁾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금의 용도에 경제사업으로 인한 조합 손실 및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 지원 포함 필요

5)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4(기금의 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회원의 경제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용으로 사용한다.

1. 농축산물의 수급불안, 가격진폭 등의 사유로 판매·유통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사업 손실<후략>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134조의6(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영) ① 중앙회는 도시조합이 도시조합 외의 조합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 3. 그 밖에 상생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제59조의2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로 조성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4조의7(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34조의6에 따라 도시조합이 납부한 도농상생사업비 등을 재원으로 도농상생지원자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운용한다. 1.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2. 도시조합과 도시조합 외 조합의 상생협력 활동사업 3. 그 밖에 제134조의8제1항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제> (1항에 반영) ④ 제1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 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34조의7)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신 설></u>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 위원 구성: 11인(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8인, 관련부서장 3인) • 심의·의결사항: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농 균형발전계획 등	☐ 상생협력위원회 ▪ 위원 구성: 20명 이내 -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농식품부장관 지정 공무원 1명, 중앙회 집행간부 1명 등 ▪ 심의·의결사항 - 도시조합 역할 강화, 도농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농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농 균형발전계획

☐ 주요내용

○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 등을 규정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르면 상생협력위원회 위원은 회원조합장 8인 등 11인으로 구성하고, 심의·의결사항은 도농상생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등임⁶⁾.

6)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제72조의3(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 ① 중앙회는 기금의 원활한 운용 및 도시농축협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본부에 "상생협력위원회" (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손실보전 대상, 지원대상 회원 및 금액, 지원한도, 지원시기 등 기금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
2. 도시농축협 역할 강화 방안, 도농상생 관련 주요 추진사업 등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하며, 조합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위원장 : 조합장 1인(조합장위원 중 호선)
2. 위 원 :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전무이사가 위촉하는 조합장 8인, 관련부서장 3인<후 략>

□ 검토의견

- 현재 중앙회는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에 따라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나, 개정안은 위원을 20인 이내로 확대하고 심의·의결사항에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법률에 상향 규정**
 - 다만, 중앙회가 도농상생지원자금 운용을 위해 내부적으로 운영 중인 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보다 설치 근거는 법률에 두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수정의견 p.19>
- (농식품부 의견) 도농상생지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과 같이 중앙회 내부규정으로 상생협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 (농협중앙회 의견) 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만을 규정하고 위원의 구성 및 심의 의결사항 등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위임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설>	제134조의7(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중앙회에 도시와 농촌의 상생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회원조합장 16명 이내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1명 3. 중앙회 전무이사 소관 사업부문 집행간부 1명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5. 중앙회 전무이사가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1명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34조의6제4항에 따른 도농상생지원자금의 조성·운용계획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계획 2. 그 밖에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도시와 농촌 간 상호교류 추진 등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4조의8(상생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삭제> ③ <삭제>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8. 경제사업 기준 이행 평가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안 제142조제2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중앙회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 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경영 개선 요구 - 합병 권고 등 필요한 조치	☐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 경영 개선 요구 - 합병 권고 등 필요한 조치 - <u>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u>

☐ 주요내용

- 중앙회 회장이 회원의 경영 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 이행 현황 평가 후 가능한 조치로 기존의 경영개선 요구, 합병 권고 등 조치 외에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를 추가

☐ 검토의견

- 조합 평가 결과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요구가 매년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 **도농상생사업비 외의 추가 납부**를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침익적 조치임을 감안하여 **추가 납부 요구 상한을 적정 수준으로 정하도록** 할 필요

<수정의견 p.21>

- 농식품부 의견: 도농상생사업비 납부액 총합을 신용매출총이익의 5% 이내로 규정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생략) ② 회장은 회원의 경영 상태 및 회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경제사업 기준에 대하여 그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u>경영 개선</u> 요구, 합병 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고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며, 조치 결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2조(중앙회의 지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제59조의2에 따른 <u>도농상생사업비 납부, 경영 개선</u> ----- ----- ----- ----- ----- -----.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제134조의6에 따른 <u>도농상생사업비의 추가 납부 요구(회원의 연간 납부금 총액은 전년도 신용매출총이익의 100분의 5 이내에서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u> , <u>경영 개선</u> ----- -----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9. 회원조합지원자금 관련 규정 신설(제136조의2~제136조의5)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정관」 및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 조성운용: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이차보전자금(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하여 매년 조성·운용계획 수립 • 자금배분: 자금지원심의회에서 의결한 연도별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배분 • 심의회: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 정보공개: 자금지원심의회 의결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	☐ 회원조합지원자금 ▪ 조성운용: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조성·운용 계획 수립 ▪ 자금배분: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 ▪ 심의회: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 자금선정위원회: 자금 담당 사업부서별 지원대상·규모 결정을 위한 선정위원회 설치(5~15명, 외부전문가 과반) ▪ 정보공개: 자금조성 및 운용계획,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및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 인터넷 공개 ▪ 평가: 자금지원 성과분석 및 평가를 매년 전문기관·단체에 위탁 실시 ▪ 환류: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 자금조성·운용계획에 반영

☐ 주요내용

- 회원조합지원자금의 ① 조성·운용, ② 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 설치, ③ 사업부서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한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⑤ 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의 법적 근거를 마련

※ 「정관」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은 중앙회가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이차보전자금(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한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심의회에서 의결한 연도별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배분하며, 의결사항은 의결 즉시 그 결과를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 현황

- 현재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은 중앙회 「정관」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중앙회와 경제지주회사가 자금 규모·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자금지원심의회가 의결하여 확정하고 있음.
- '24년말 기준으로 중앙회는 약 15조원의 자금을 지역조합에 무이자로 지원하였고 지역조합은 자금 수혜액을 유통 지원, 자재지원, 복지증진 등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검토의견

- 법률상 회원조합지원자금 배분기준·선정절차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자금 배분에 있어 회장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라,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금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
- 다만, 일부 조항과 관련하여 다음사항 고려 필요<수정의견 p.24>
 - ① 136조의3(자금선정위원회 설치): 개정안 제136조의2제3항에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자금지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와 별도로 사업부서별로 자금선정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논의 필요
 - ② 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등 공개 등):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회원인 조합에 통지하는 것 외에 인터넷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실익에 대한 검토 필요.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은 법률에 규정하고 통지의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위임 검토 가능
- (농식품부의견) 자금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 자금선정위원회의 설치와 자금지원심의회와 중복되므로 불필요한 측면이 있고, 회원 통지 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필요
- (농협중앙회의견)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상호부조 목적으로 중앙회 정관에 따라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지원심의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자금은 심의회 의결을 거친 연도별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자금 배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중앙회가 현행과 같이 정관에 따라 운용 필요
 - 회원조합지원자금은 상호부조자금으로 내부정보의 대외공개 시 부작용(자금 지원 압력, 경영상 비밀공개 등)이 우려되며, 법률에 평가 및 환류를 규정하는 것도 과도한 측면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34조(사업) ① ~ ④ (생략) ⑤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손실보전자금, <u>대손보전자금</u>, <u>조합상호지원자금</u> 및 <u>조합병지원자금</u>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운용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립한 계획에 따른다. ⑥ 중앙회는 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원 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유통지원자금은 제134조제5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및 제159조의2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 등으로 조성한다.	제134조(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대손보전자금</u> 및----- ----- ----- -----. <삭제>	제134조(사업)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제136조(유통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조합상호지원자금 ----- -----.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신 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① 중앙회는 조합상호지원자금과 그 밖에 이자지원 등의 형태로 회원을 지원하는 자금(이하 “회원조합지원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사업별 지원금액,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조합별 지원금액 산정 방법 등이 포함된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지원자금은 회원의 경제사업 실적 등 정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자금지원심의회를 둔다. ④ 그 밖에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6조의2(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운용)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 ①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금 배정 등을 담당하는 소관 사업부서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를	제136조의3(지원대상 선정 등)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는 자금지원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① 중앙회는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당해 연도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을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10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지하고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마지막 자금지원심의회 의결 직후에는 당해연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4(자금운용계획 및 배분 공개) ① 중앙회는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든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원조합지원자금 조성 및 운용계획 2.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사업별·조합별 지원규모, 배분기준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3. 연간 사업별·조합별 총 지원규모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	제136조의5(회원조합지원자금의 평가 및 환류) ① 중앙회는 매년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에 대하여 성과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분석 및 평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가는 <u>전문기관</u>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u>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u>구성·운영계획</u>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를 <u>관계 전문기관</u>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u>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u> ③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성과분석 및 평가결과를 제136조의2제1항에 따른 <u>회원조합지원자금 구성·운영계획</u>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지역농협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안 제44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지역농협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준법감시인 도입

□ 주요내용

- 지역농협이 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검토의견

- 지역조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등의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
- 다만,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수정 필요<수정의견 p.29>
 - 준법감시인 담당 업무를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관한 업무’로 규정한 것 관련, 의미가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중앙회 준법감시인 규정⁷⁾을 참고하여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감사에게 보고하는 사람’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
 - 또한,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사항을 감사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므로 준법감시인 선임대상에서 상임감사는 제외

7) 「농업협동조합법」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조문자료

[illegible]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② <u>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제5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감사 또는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u>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제52조(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② 지역농협의 임원은 그 지역농협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u>야 한다.</u> ② <u>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u>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직원 중에서 준법감시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11. 농협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점검 의무화(안 제125조의4)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 중앙회의 내부통제기준 운영 ☐ <u>내부통제기준 운영 실태 점검 및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u>

☐ 주요내용

- 농협중앙회가 내부통제기준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함.

☐ 검토의견

- 농협중앙회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통해 내부통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로 타당
- 다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필요<수정의견 p.32>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회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u><신 설></u> <u><신 설></u> ④ (생략)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중앙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u> ⑤ <u>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취약 부분을 내부통제기준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25조의4(내부통제기준 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u>중앙회는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u> ⑥ (개정안과 같음)

12. 조합장 선출방식의 직선제 일원화(안 제45조)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조합장 선출방식 - 직선제, 간선제(대의원회 선출), 호선제(이사회 선출)	☐ 조합장 선출방식 - <u>직선제로 일원화</u>

☐ 주요내용

- 지역조합의 조합장 선출방식을 조합원의 직접 투표(직선제)로 일원화하되, 품목은 현행 규정 유지

☐ 현황

- 현재 1,031개 지역조합(지역농협 915, 지역축협 116)의 조합장 선출방식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조합이 총회에서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고 있고, 5개 조합만⁸⁾이 대의원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으며, 이사회 호선으로 조합장을 선출하는 조합은 없음.

【 선출 방식에 따른 조합 비율 】

구분	조합원 직선	대의원 간선	이사회 호선	계
조합수(비율)	1,026(99.5%)	5(0.5%)	0	1,031(100%)

8) 지역농협 3(남서울, 서울서남부, 서서울농협), 지역축협 2(부산, 서울축협)

□ 검토의견

- 조합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의 의사를 최대한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로 일원화하여 절차적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취지
- 다만, ① 대의원회 선출(간선제)과 이사회 선출(호선제)은 선거 과열 등 직선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원 선출의 효율성 제고 및 조합원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각각 도입된 점과 ② 현재 간선제를 채택하고 있는 조합도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직선제로 전환 가능한 점 고려 필요
-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의견) 조합장의 선출방식은 각 조합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자율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투표로 총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 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생략) 2. 제45조제5항제1호에 따른 조합장의 선출 3.·4. (생략) ② (생략)	제41조(총회 의결의 특례)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제45조제5항----- 3.·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생략)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출한다. 1.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 2. 대의원회가 선출 3.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 ⑥ ~ ⑩ (생략)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한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생략) ④ 지역농협은 제4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51조(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45조제5항----- -----

현행	개정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 ----- -----.
⑤·⑥ 삭제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생략)	제54조(임원의 해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조합원은 제45조에 따른 선출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이사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이사회의 해임 요구에 따라 총회에서 해임 의결. 이 경우 이사회의 해임 요구와 총회의 해임 의결은 제1호에 따른 의결 정족수를 준용한다.	<삭제>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2조(준용규정) ① 품목조합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같은조 제2항은 제외한다)까지, 제29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57조의2,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	제112조(준용규정) ① ----- ----- -----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8

[illegible]

현행	개정안
하사업”으로, 제67조제3항 중 “제57조제1항제1호”는 “제111조제1호”로, 제80조 중 “합병·분할 또는 조직변경”은 “합병 또는 분할”로 본다. ② (생략)	----- ----- -----.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3.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제한(안 제48조제1항)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연임제한 - 상임조합장: 2회 - 비상임조합장: 무제한	☐ 연임제한 - 상임조합장: 2회 - 비상임조합장: <u>2회</u>

☐ 주요내용

- 상임조합장 외에 비상임조합장의 연임도 2회로 제한

☐ 현황

- 비상임조합장의 선임 횟수를 보면, 2025년 10월 기준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618개 조합 중 208개소(33.7%)는 초선인 비상임 조합장이고 103개소(16.6%)가 4선 이상인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으며 최다선 조합장은 11선임.

【 비상임조합장 선임 횟수 】

(단위 : 개, %)

구분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10선	11선	합계
조합수	208	187	120	58	27	10	6	1	1	618
구성비	33.7	30.3	19.4	9.4	4.4	1.6	1.0	0.1	0.1	100

□ 검토의견

- 조합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임조합장이 장기간 연임하면서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
- 비상임조합장은 상임조합장과 비교하여 신용사업 등 일부사업 집행이 제한되지만, 지역조합의 대표권자로서 직원임면권 행사가 가능하고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1회에서 2회로 제한하고 있음.

【 상임·비상임조합장의 업무범위 】

자산총액	조합장	업 무
2,500억원 이상	상임	▪ 모든 사업(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비상임	▪ 신용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전부 또는 일부 - 상임이사가 신용사업 등 수행
2,500억원 미만	상 임	▪ 모든 사업(상임이사 위임·전결업무 제외)
	비상임	▪ 업무집행 불가 - 상임이사가 업무집행

【 타 조합의 조합장(이사장) 연임 제한 사례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상임조합장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2차 연임
비상임조합장	제한 없음	1차 연임	제한 없음	2차 연임	2차 연임

- (농식품부의견) 비상임 조합장은 조합 대표권, 직원 임면권 등을 통해 조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수협 등 타 조합은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을 일정 횟수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연임 제한 필요
- (농협중앙회 의견) 상임조합장에 비해 업무권한이 적은 비상임조합장에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조합장선거는 조합경영에 대한 조합원의 평가로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조합장과 이사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u>조합장(상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u>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설립 당시의 조합장, 조합원인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조합장과 조합원인 이사: 4년 2. 제1호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 2년 ② (생략)	제48조(임원의 임기) ① ----- ----- <u>조합장</u>-----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14. 중앙회 이사회 및 임원에 경제·금융지주 대표 추가(안 제125조제2항제6호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중앙회 이사회 구성 -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장 이사, 사외이사 ☐ 중앙회 임원 -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1명 포함 이사 28명 이내, 감사위원 5명	☐ 중앙회 이사회 구성 -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장 이사, 사외이사 + <u>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대표이사</u> ☐ 중앙회 임원 - 회장, 상호금융대표이사, 전무이사 1명 포함 이사 28명 이내, 감사위원 5명 + <u>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농협금융지주대표이사</u>

☐ 주요내용

- 중앙회 이사회 및 중앙회 임원에 농업경제대표이사, 축산경제대표이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를 포함

☐ 현황

- 농협 조직은 ① 총 1,110개의 농축협조합 등과 ② 농축협조합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2012년, 2017년 각 중앙회에서 분리된 ③ 농협금융지주와 ④ 농협경제지주로 구성

※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 경과: 농협의 신용사업 편중과 경제사업 소홀, 시장개방에 따른 유통혁신 요구로 1990년대 중반부터 사업구조 개편 논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사업 경쟁력 약화로 개편 필요성이 대두하여 농협개혁위원회가 신용·경제사업 분리안을 마련해 2009년 정부에 건의→ 정부가 공론화를 거쳐 2009년 말 국회에 개편안 제출→ 경제·금융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중앙회-2지주(금융·경제) 체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이 2011년 개정되어 2012년 시행

□ 검토의견

- 경제·금융대표이사를 중앙회의 임원이자 이사회 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중앙회로의 권한 집중을 막고 중앙회와 계열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려는 취지
- 다만, 각 법인의 독립성 및 책임경영의 강화를 위하여 경제·금융지주를 중앙회에서 분리한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 고려 필요**
- (농식품부 의견) 자회사 임원을 모회사의 임원으로 겸직하도록 하는 입법례는 찾기 힘들며, 각 법인의 경영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중 검토 필요
- (농협중앙회 의견) 중앙회-지주회사 간 이해관계 대립 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 지주회사에 대한 대표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우려가 있고, 별도 선출절차 없이 지주 대표이사를 중앙회 당연직 이사로 규정하는 것은 총회의 임원 선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 이 있어야 한다. 1. 2. (생략) 3. <u>임원</u> 및 조합감사위원장의 선출과 해임 4. 5. (생략)	제123조(총회의 의결 사항) ----- -----. 1. 2. (현행과 같음) 3. <u>임원(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는 제외한다)</u> ----- ----- 4. 5.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되, 이사회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은 회원인 조합의 조합장(이하 “회원조합장”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1. 회장 2. 삭제 3. 삭제 4. 상호금융대표이사 5. 전무이사 <u><신설></u>	제125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2. ---- 3. ---- 4. ----- 5. ----- 6. <u>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u> 가.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 이사 및 축산경제대표이사 나. 제161조의10에 따른 농협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

현행	개정안
③ ~ ⑦ (생략) 제126조(임원) ① 중앙회에 임원으로 회장 1명, 상호금융대표이사 1명 및 전무이사 <u>1명</u>을 포함한 이사 <u>28명</u> 이내와 감사위원 5명을 둔다. ② (생략)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사를 제외한 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 중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서 신설> ⑤ (생략) ⑥ 회원조합장인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그 밖의 임원(감사위원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⑦ ~ ⑪ (생략) 제161조(준용규정)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3항, 제1	③ ~ ⑦ (생략) 제126조(임원) ① ----- -----<u>1명</u>,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 3 명을-----<u>31명</u>-----. ② (현행과 같음) 제130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 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이사는 제161조의3제2항에 따라 선임된 사람으로 하고, 제125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이사는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임원 선임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한다.</u> ⑤ (현행과 같음) ⑥ ----- ----- -----<u>. 다만, 제12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u>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161조(준용규정) -----

[illegible]

15.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신설(안 제125조의5)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정관」 및 「인사추천위원회 규정」 • 임기: 위원회 구성 후 해당 인사 선출 시 • 소집: 위원장이 소집. 단, 구성 후 최초회의는 이사회회장이 소집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후보자모집: 공개모집 가능 • 기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 인사추천위원회 ■ 임기: 위원회 구성 후 해당 인사 선출 시 ■ 소집: 위원장이 소집. 단, 구성 후 최초회의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임원후보자인 위원의 의결권 제한 ■ 공개모집: 의무화 ■ 기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

☐ 주요내용

-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 규정에 위원의 임기, 회의의 소집, 의결요건, 후보자의 모집 및 심사기준 등 세부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신설

※ 정관 및 인사추천위원회규정에 임기, 소집, 의결(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공개모집,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등에 대하여 규정

☐ 검토의견

- 인추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관 및 중앙회 내규인 인사추천위원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
- 다만, 다음과 같은 점 고려 필요
 - 인사후보자를 공개모집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임원후보자 공개모집을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⁹⁾ 고려 필요
 - 위원장 유고 시 직무대행, 심사절차, 심사기준 등은 정관을 통해서도 안정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운영상 세부사항으로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일부 자구 수정 필요<수정의견 p.52>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임원후보자 추천 기준 등) ④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농식품부의견) 농협중앙회 임원 인사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의하나, 공개모집 의무화 시 후보자 난립, 경쟁 과열이 우려되어 제외 필요
- (농협중앙회의견) 현행과 같이 중앙회 정관과 규정에서 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임원후보자 공개모집 의무화를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공개모집 의무화 시 후보자 난립, 경쟁과열 등으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인사 검증기능 약화 우려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u>인사추천위원회를 둔다.</u> 1. 제130조제2항에 따라 선출되는 사업전담대표 이사등 2.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선출되는 이사 3. 제129조제3항에 따라 선출되는 감사위원 4. 제144조제1항에 따라 선출되는 조합감사위원장 ② <u>인사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1.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 2. 농업인단체 및 학계 등이 추천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공무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이사회가 위촉하는 4명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 -----<u>인사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u> ----- 1. ~ 4. (현행과 같음) ② <u>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임원후보자”라 한다)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결위되어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u> ----- 1. ~ 2. (현행과 같음)	제125조의5(인사추천위원회)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기만료나 사임 등의 사유로 결위되어 해당 인사를 새로이 선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과 같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③ (생략) <u><신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 후 임원후보자가 임원으로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구성일부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원인이 된 인사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u><신설></u>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후 최초로 개최되는 위원회는 위원 중 최연장자가 소집한다.	⑤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⑥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정관 위임 검토)
<u><신설></u>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개정안 7항과 같음)
<u><신설></u>	⑧ 위원은 본인을 임원후보자로 추천하는 결의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⑦ (개정안 8항과 같음)
<u><신설></u>	⑨ 위원회는 임원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원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사로 추천할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u><신설></u>	⑩ 위원회는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⑩ <삭제> (정관 위임 검토)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신 설>	<u>서류심사를 실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를 결정한다.</u> ⑪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임원후보자 심사기준을 정하고 임원후보자를 심사한다.</u> 1. <u>임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u> 2. <u>농업 및 농협에 대한 이해와 비전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u> 3. <u>조직관리 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u> 4. <u>윤리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u>	⑪ <삭 제> (정관 위임 검토)
<신 설>	⑫ <u>위원회의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 의 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u>	⑨ (개정안 12항과 같음)
④ (생 략)	⑬ (현행과 같음)	

16. 인사교류심의회의 설치·운영(안 제131조의2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u><신 설></u> ※ 「인사규정」 • 심의대상: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 구성: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중앙회 인사담당 집행간부, 조합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장, 소속 인사담당 부서장 • 의장: 전무이사	☐ 인사교류심의회 ■ 심의대상: 중앙회 사업부문간,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인사교류 ■ 구성: 농업경제대표이사,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중앙회 인사담당 집행간부, 지주회사 인사담당, 집행간부 ■ 의장: 농업경제대표이사

☐ 주요내용

-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교류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심의회의 구성, 심의사항, 의결방식을 규정

☐ 현황

- 농협중앙회는 내규인 인사규정에 따라 중앙회 사업부문 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무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운영 중
 - 중앙회는 매년 정기인사 시(12월) 중앙회 내 사업부문 간 인사교류를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를 1회 개최하고 있고, 법인 간 인사교류는 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실시

☐ 검토의견

- 농협중앙회 내규인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교류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면서 심의사항에 농협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 간 인사교류도 포함함으로써 **인사교류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
-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의견) 계열사(지주회사) 간 인사교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없으며 교류 관련 세부 사항은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31조의2(인사교류심의회) ①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교류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u> <u>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농업경제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된다.</u> <u>1. 농업경제대표이사</u> <u>2. 사업전담대표이사등</u> <u>3. 제1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u> <u>4. 제2호 소속의 인사담당 집행간부</u> <u>5. 제161조의10에 따라 설립된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인사담당 집행간부</u> <u>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u> <u>2. 인사교류 대상직급, 대상자 선정기준 및 교류규모</u> <u>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 <u>④ 심의회는 중앙회와 지주회사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인사교류 기본방침 심의 시 참고하여야 한다.</u> <u>⑤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⑥ 심의회 의사에 대하여는 그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u> <u>⑦ 그 밖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u>

17. 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안 제125조의7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신 설> ※ 「회원조합지도·지원 규정」 • 목적: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 • 구성: 회원조합장으로 구성 • 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회의록 작성, 참석위원 서명받아 비치	☐ 운영협의회 ▪ 목적: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 ▪ 구성: 회원조합장으로 구성 ▪ 운영: 특정회원에게 의해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 ▪ 회의: 회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

☐ 주요내용

-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농협중앙회에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두도록 함.

☐ 현황

- 농협중앙회는 정관 및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에 따라 조합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 외에 상호금융운영협의회, 품목별 협의회, RPC운영전국협의회 등 조합장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내부적으로 운영 중임
 -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도 단위 협의회 16개, 축산협의회 11개, 품목협의회 8개, 시군협의회 138개를 합하여 모두 173개의 협의회가 설치·운영 중임.

☐ 검토의견

- 운영협의회의 설치와 회의록 공개 근거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운영협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
- (농식품부·농협중앙회 의견) 이미 내부규정에 따라 회원조합장으로 구성된 조합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농협 운영에 필요한 회의체는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25조의7(운영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지역농정협력활동과 회원 간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둔다. ② 운영협의회는 회원조합장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협의회는 특정한 회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되지 아니하도록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④ 운영협의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상향(안 제159조의2제1항)

현 행	윤준병·안호영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영업수입(매출액)의 2.5%	영업수입(매출액)의 5%	영업수입(매출액)의 3%

□ 주요내용

-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명칭의 대가로 부과하는 농업지원사업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영업수익(매출액)의 2.5%에서 5% 또는 3%로 상향

□ 현황

- 농업지원사업비는 중앙회 정관 제1조의2제3항에 따라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해당 법인의 직전 3년 평균 매출액(금융계열사는 영업수익 기준)을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고¹⁰⁾, 부과율 상한은 농업지원사업비 규정이 신설된 2012년부터 2.5%로 유지 중

[계열사별 매출액 규모에 따른 부과율 범위]

그룹	해당 계열사	매출액	부과율 범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1그룹	은행, 투자증권 등	10조원 초과	0.5 ~ 1.5	1.5 ~ 2.5
2그룹	보험사, 경제지주 등	3조원 ~ 10조원	0.3 ~ 0.5	0.3 ~ 1.5
3그룹	기타	3조원 이하	0.3 이하	

10) 「농협 중앙회 정관」 제1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지원사업비는 매출액(부과율을 정하기 직전 3년의 평균을 말한다.이하 이조에
서 같다)규모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회에서 정한 부과율에 해당 법인의 매출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 10조원 초과 : 1,000분의 15 초과에서 1,000분의 25 이하
2. 매출액 3조원 초과에서 10조원 이하 : 1,000분의 3 초과에서 1,000분의 15 이하
3. 매출액 3조원 이하 : 1,000분의 3 이하

- 농협은행 등 금융계열사의 영업수입 등 증가에 따라 농업지원사업비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농업지원사업비 수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농업지원 사업비	금융	3,858	4,136	4,281	4,460	4,505	4,927	6,111	6,503
	그외	445	453	460	473	481	507	556	594
	계	4,303	4,589	4,741	4,933	4,986	5,434	6,667	7,097

□ 검토의견

-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
- (농식품부 의견) 지역조합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과율 상향에 따른 농협은행 등의 재정건전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3%로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
- (금융위 의견) 부과율 상향이 없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그간 충분한 농지비를 납부하여 왔고 향후에도 납부 금액이 확대될 예정인 점, 납부액이 증가하는 경우 은행 등의 건전성 문제 우려가 제기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개정에 신중할 필요
- (농협중앙회 의견) 금융계열사 매출 성장으로 농업지원사업비의 자연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농협은행의 부담액 급증은 재무악화에 따른 사업수행 차질 및 자본 비율 하락 등 우려가 있어 현행 기준 유지 필요

☐ 조문자료

현행	윤준병·안호영의원안	이원택의원안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 또는 표식을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u>1천분의 25</u>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조합만이 출자한 법인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 ----- ----- ----- ----- ----- ----- <u>1000분의 50</u> ----- ----- ----- ----- ----- -----.	제159조의2(농업지원사업비) ① ----- ----- ----- ----- ----- ----- ----- <u>1000분의 30</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9.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사항 등(안 제161조의7제1항 후단 및 제7항 신설)

현 행	윤준병의원안
☐ 농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	☐ 농식품부장관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 - <u>평가·점검 시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 반영</u> - <u>평가 및 점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u>

☐ 주요내용

- 농식품부장관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점검 시에 ①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고 ②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검토의견

- ①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농협의 설립 목적과 부합하는 사항**으로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
- ②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할 경우 **국회의 감시·통제 기능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

☐ 조문자료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 ----- ----- . 이 경우 조합과 조합원의 편익증대, 조합과의 상생발전 등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안 제49조제1항제7호)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임원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미경과(5호)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7호)	☐ 임원의 결격사유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3년 미경과 - <u>금고이상의 형</u> 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주요내용

-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변경

☐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호)’과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7호)’ 포함
- 당초 형의 집행유예는 ‘금고형 이상’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였으나 「형법」 제62조의 개정(2016년 1월)¹¹⁾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가능해졌는바, 현행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발생
- 개정안은 벌금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기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집행유예의 대상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

11)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현행과 같음)
6. (생략)	6. (현행과 같음)
7. <u>형의</u>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u>금고 이상의 형의</u> ----- -----
8. · 12. (생략)	8. · 12. (생략)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21.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 추가(제49조제1항제10호)

현 행	윤준병의원안
☐ 임원의 결격사유 -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 - 임원의 결격사유에 납입출자분 보유 기준 미적용	☐ 임원의 결격사유 -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 <u>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자</u> ☐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 - 임원의 결격사유에 <u>납입출자분과 조합원 신분 보유 기준 적용</u>

☐ 주요내용

- ① 지역농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
- ②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원 신분과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을 적용

☐ 검토의견

- ① 현행법상 ‘2년 이상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보유’에 조합원 자격 유지 요건이 포함(출자는 조합원만이 가능)되므로 개정 실익은 크지 않으나,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 ② **형평성** 측면에서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지역농협에 대해서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 및 조합원 자격 보유를 규정할 필요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제4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9. (생략)	1.~9. (생략)
10.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出資座數) 이상의 납입 출자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하다.</u>	10. ----- <u>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u> ----- ----- ----- ----- ----- <u>선거일 공고일 현재 조합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분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u> <u>을 말한다.</u>
11.·12. (생략)	11.·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22. 중앙회 등 선거 관여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 마련(안 제172조제1항)

구분	현 행	윤준병의원안
7조1항: 조합, 중앙회 등에 대한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벌칙 조항 ×	벌칙 조항 ○
7조2항: 모든 자에 대한 공직선거 관여 금지	벌칙 조항 ○	벌칙 조항 ○

□ 주요내용

- 현행법 제7조제1항¹²⁾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검토의견

- 현행법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해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조합등 및 중앙회’의 공직선거 관여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필요한 입법조치
 - 다만, 법인 대상 벌금 상한 수준(2,000만원)은 위반행위 억제효과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12) 「농업협동조합법」 제7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중앙회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1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72조(벌칙) ① ----- -----.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23. 간부직원 등 이사회 의견 진술 조항 정비(안 제43조 등)

현 행	윤준병의원안
간부직원 등은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이사회 등이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간부직원 등이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조문을 이사회 등이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비

□ 검토의견

- 현행 규정은 이사회 등이 필요한 경우 간부직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도록 한 취지로 보이나, 간부직원 등의 자율적 출석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명확히 규정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제43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간부직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⑦ (생략)	제43조(이사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이사회는 간부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u> --- -. ⑦ (현행과 같음)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집행간부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⑦ (생략)	제125조(이사회) ① ~ ⑤ (생략) ⑥ <u>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u> -----. ⑦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생략) ⑦ <u>집행간부는 소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u> ⑧ (생략)	제125조의2(상호금융 소이사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소이사회는 집행간부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u> ---. ⑧ (현행과 같음)

24. 조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안 제65조의2제2항 신설)

구분	현 행	임미애의원안
외부회계감사 대상	일정 자산규모(500억원) 이상의 지역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4년	1년

□ 주요내용

- 자산 등 사업 규모가 일정 규모(자산 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 현황

- 2024년 12월 기준 총 1,111개 조합 모두 자산규모 총액 500억원 이상으로 4년마다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에 해당
 - 2015년 이후 동시조합장 선거 실시로 감사수감 시기가 4년 주기로 집중되어 2023년·2024년에는 외부 회계감사 수감대상이 없었으며, 2025년에는 1,077개소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예정

【 연도별 외부회계감사 수감현황 】

구분	'19	'20	'21	'22	'23	'24	'25(예정)
수감대상(개소)	4	1	1,072	24	-	-	1,077

□ 검토의견

- 외부 회계감사의 주기를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외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조합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횡령·배임 및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조합 회계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
- 외부 회계감사를 연례화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로 건전한 조합 경영에 기여할 수 있고,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 주기가 1년 또는 2년인 점 고려 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상호금융업권 외부 감사 현황 】

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법률 근거	농협법 제65조의1제1항 등	수협법 제169조제7항 등	산림조합법 제123조제4항 등	신협법 제47조제5항 등	새마을금고법 제76조제3항 등
외부감사 자산 요건	500억	300억	500억	300억	500억
도입시기	'04년	'04년	'04년	'98년	'99년
감사주기	4년	2년	2년	1년	자산 3,000억 이상 : 1년 자산 500억 이상 : 2년
감독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시·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 (농식품부 의견) 농협은 현재 상호업권 내에서 외부감사 주기가 가장 길어 주기 단축 필요성이 큰 상황
- (농협중앙회 의견) 경영부담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에 따른 수감주기 차등적용이 필요하며 다양한 감독장치가 있는 조합의 특성 고려 필요

25.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안 제65조의2제2항 신설)

현 행	임미애의원안
<신 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4+2)

□ 주요내용

-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 검토의견

- 조합이 자유 선임한 감사인의 감사 결과를 지정 감사인이 사후 검증하게 하여 감사의 품질을 제고함으로써 **회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
-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 필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가격협상력 약화로 인한 회계감사 비용의 증가 및 기업의 감사인 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금융당국에서 2028년에 원점 재검토를 실시하여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 관계부처 합동, 2024. 12.)인 점 고려 필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농협 외에 신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 타 상호금융권에 대한 도입 논의와 함께 이루어질 필요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할 경우 적용 대상의 적정 범위(자산 규모) 및 주기의 적정 수준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

- (농식품부 의견) 도입 필요성은 인정하나, 도입방법과 적용범위 검토, 예산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
- (금융위 의견) 도입에는 동의하나 향후 업권에 발생할 영향, 제도의 실질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필요
- (농협중앙회 의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대상(주권상장법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과 경영방식, 규모가 상이한 조합에 대한 동일규제는 과도함.

□ 조문자료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u>조합장의 임기 개시일 직전 회계연도 말의 자산 등 사업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농협은 그 조합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u> <u><신 설></u>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직전----- ----- -----<u>매년</u>----- ----- -----.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회계 감사를 받은 지역농협의 경우 그 다음 연속하는 2개 회계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감사인 지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u>	제65조의2(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 감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26. 부칙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안호영의원안	임미애의원안
☐ 시행일: 공포 후, 공포 후 3개월, 공포 후 6개월로 구분 ☐ 적용례: 조합장 선출, 연임 제한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주요내용

- 윤준병의원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조합장 선출과 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두고 있음.

공포 즉시	공포 후 6개월	공포 후 1년
조합장 선출방식, 경제지주 대표 등 중앙회 임원에 추가, 회원조합지원자금에 관한 사항, 인사추천위원회	조합 내부통제기준, 중앙회 내부통제기준 점검, 조합장 연임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상향, 벌칙 규정 정비 등	도시조합, 도농상생사업비, 도농상생지원자금 등에 관한 사항

- 이원택·안호영의원안은 농업지원사업비 상한 상향 규정(제159조의2)의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로 규정
- 임미애의원안은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 및 지정 감사인 도입 규정(제65조의2)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을 규정

☐ 검토의견

- 윤준병의원안을 기준으로 수정의견 제시<수정의견 p.78>
- 외부 회계감사 연례화 및 지정 감사인 도입에 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적용례 신설

□ 조문자료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안호영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수정의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1조, 제43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4조, 제107조(제44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12조(제59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제112조의11,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5조의4, 제125조의7, 제126조, 제130조제4항 및 제6항, 제159조의2, 제161조,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3조, 제44조의2, 제48조, 제49조, 제107조(제44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12조, 제112조의11, 제125조의2, 제125조의4, 제159조의2, 제1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2조, 제10조, 제57조의2, 제134조의6, 제134조의7, 제134조의8, 제142조,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은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안호영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수정의견
제59조의2, 제107조·제112조(제59조의2 준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134조의6, 제134조의7, 제142조, 제16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5항(제10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는 비상임조합장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이후 선출되어 개시되는 임기를 그 첫 번째 임기로 본다.			<u>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u> 제2조(조합장 선출에 관한 적용례) (윤준병의원안과 같음) 제3조(연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윤준병의원안과 같음) 제4조(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65조

윤준병의원안	이원택·안호영의원안	임미애의원안	수정의견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의 연속하는 4개 회계연도의 산정은 같은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는 회계연도부터 계산한다.

